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영유아보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보건복지부 소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종전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, 수탁 기관의 지위로는 그 사업을 장기적·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’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(법률 제18620호, 2021. 12. 21. 공포, 2022. 6. 22. 시행)됨에 따라, ‘한국보육진흥원’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,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에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3. 15. ~ 4. 2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“각 육아종합지원센터””를 “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각 육아종합지원센터”를 각각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</p> <p>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<u>각 육아종합지원센터</u>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4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) ① <u>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</u>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② <u>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</u>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③ <u>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</u>은 상근(常勤)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제15조(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, 육아종합지원센터의</u></p>	<p>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</p> <p>① ----- ----- “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”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) ①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----- -----.</p> <p>제15조(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

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26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 략)

<신 설>

제16조의2(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26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

② · ③ (생략)

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
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51